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본청 223호

2018. 8. 22(수) 오전 10:00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국회의원 심상정 · 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개 요

- 일시 : 2018년 8월 22일(수) 10:00
 -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주최
 - 좌장 : 추혜선 의원
 - 발제 :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 토론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

프로그 램

10:00	진행자의 개회 안내 및 내빈 소개
-	내빈 인사말
10:15	좌장의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10:20	발제 :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10:45	토론(1)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토론(2)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토론(3)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11:10	발제자 답변
11:13	플로어 질의 & 응답
11:27	토론자 및 발제자 마무리 발언
11:37	좌장의 코멘트 및 폐회 선언
11:40	기념촬영

목 차

인사말

이정미 정의당 대표	1 p
심상정 국회의원	5 p
추혜선 국회의원	9 p

발제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15 p
------------------	------

토론

김남희 참여연대 팀장, 변호사	43 p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53 p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61 p

[인사말]

이 정 미

정의당 대표 ·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 분야 우클릭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의당과 경실련,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좌담회 마련에 함께하신 여러분, 또 참여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인사 올립니다.

‘규제혁신’이란 표현이 붙긴 했지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규제완화 5개 법안은 너무나 위험천만합니다. 규제를 먼저 풀고, 문제 되는 내용은 사후에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야말로 순서가 뒤집힌 것입니다. 특히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과 환경에 관한 규제는 불가역성 측면에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자세로 일관해야 합니다. 우리사회 균형발전, 공정거래와 직결된 규제 역시 보호돼야 할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규제를 간과해 벌어졌던 여러 비극을 수많은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안방의 세월호참사라 불렸던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있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카드사용 한도 규제폐지, 저축은행의 제로베이스 규제완화가 2002년 신용카드 대란, 2011년 저축은행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정부여당의 규제완화 입법 추진은 촛불정권의 정체성을 망각했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대선당시 금산분리 원칙을 약속하고, 의료영리화 저지,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를 공약했던 문재인정부는 출범 1년 만에 대국민약속을 뒤집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국민들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던 민주당은, 그

들과 똑같은 논리로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과제는 재벌개혁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성장의 과실을 재벌대기업이 독식해 온 과거를 바로잡고, 중소기업과 노동자도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요구가 촛불시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부여당이 허물겠다는 규제정책은 우리사회 실질적 권력으로 자리매김해왔던 재벌대기업의 독과점과 특권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은 이 같은 규제개혁에 맞서, 국민 생명과 안전, 균형발전과 공정거래를 보호하는 정치적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재벌대기업의 특권과 기득권을 확장하는 데 앞장서는 대신, 약속대로 재벌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더욱 아프게 다그치고 이끌어내겠습니다.

오늘 시민사회 전문가 분들께서 좌담회 패널로 소중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좌담회가 정부여당의 우클릭 문제를 공론화 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8년 8월 22일

정의당 대표 · 국회의원 이정미

[인사말]

심 상 정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심상정입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 교섭단체들은 5개 규제혁신법안에 대해 8월말까지 처리하겠다 합의하고 속도전처럼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들은 과거 ‘규제프리존법’이라고 불린 적이 있습니다. 국민을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대해오던 바로 그 법안들입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5개 규제혁신법안은 네거티브 규제와 사후규제의 방식을 통한 신기술 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등의 장치로 독소조항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사후규제 방식과 짧은 유효기간으로 는 그 안전성을 검증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규제개혁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사전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안전·환경보다 우선하는 그 어떤 기술과 서비스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비극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알지 못하는 화학물질의 오용으로 인해 커다란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기업혁신과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좋은 기술과 서비스라도 성과는 기업이 내고, 그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 독점과 무분별한 난개발로 국민이 고통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술과 서비스 혁신에 대한 평가,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개혁되어야 합니다.

오늘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에 응답하고 함께해주신 참여연대와 경실련에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규제개악을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2일

국회의원 심상정

[인사말]

추 혜 선

국회의원 ·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추혜선입니다.



먼저 오늘 규제혁신 5개 법안 관련 긴급 좌담회를 함께 개최해주신 심상정 의원님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발제를 맡아주신 김용신 의장님과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님, 민변 김종보 변호사님, 경실련 방효창 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7일, 규제완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여당의 급격한 우클릭과 보수야당의 오랜 당론이 맞아 떨어진 결과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법안들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법’ 혹은 ‘재벌특혜법’으로 불리기가 하던 규제프리존 법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 법안을 지지하는 안철수 후보에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계승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매우 씁쓸하고 우려됩니다.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듯 추진하는 정부·여당은 입장 변화의 배경과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각종 경제·일자리지표의 압박과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부담으로 ‘뭐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만이 엿보일 뿐입니다.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규제완화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혁신과 성장 동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법체계를 무시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추진하려는 규제완화라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고 다양한 안전장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규제샌드박스를 먼저 도입한 영국에서도 ‘임시허용·사후규제’를 도입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행 법령 하에서 금융 당국에 재량권을 더 부여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참고로 했던 일본도 임시허용이나 실증 특례에서 안전성 검증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당의 규제혁신 5개 법안은 이러한 안전장치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의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정의당은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들에 대해 원내 정당들 중 가장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논의되는 모든 상임위에 의원을 두고 있지 못하고 비교섭단체 지위의 한계로 인해 국회 내 논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좌담회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5법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정의당 민생본부장으로서, 그리고 규제완화와 관련해 중요한 법안들을 다루는 정무위 위원으로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8월 22일

국회의원 추혜선

[발 제]

김 용 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5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 분석 -

I.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5법 추진 배경

1. 문재인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려 하는가?

“1년 6개월 전 대선과 너무나 달라진 정부·여당”

- 이명박 대통령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
- 박근혜 대통령 “규제는 암 덩어리. 손톱 밑 가시”
- 문재인 대통령, “인터넷 전문은행도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며 ‘붉은 깃발법’에 비유

(1)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인터넷 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집 “재벌 부당 특혜 근절” p44, p112 -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 2018.08.07. 문재인 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

(2) 의료기기에 이어 원격 의료도 규제 완화

“재벌에게 특혜주고 국민에게 부담 주는 의료 영리화 정책 저지. 원격 진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

-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집 “의료 영리화 막고 공공성 강화” p177 -



“원격의료를 포함해 의료 부분 규제 완화도 중요한 우선순위”

- 2018.08.09. 김동연 부총리 기자 간담회 -

“전 세계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원격 의료 물결을 타지 않으면 한국 의료가 톱(top) 지위를 지키기 어려울 것” - 2018.07.19.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1주년 간담회 -

(3) 가명정보 등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활용 목적별, 활용 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집 “개인 신용 통신 정보 안전하게 보호” p59 -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적 개념체계에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산업적 연구목적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 - 2018년 7월 행정안전부 국회 업무보고 -

(4) 규제프리존법 + 규제혁신 5법 ≡ 규제완화구역법

“(안철수 후보가)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
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 - 유은혜 문재인 선본 수석대변인 -
“(규제프리존법)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 민주당 대변인 논평 -



“규제개혁은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기업 혁신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
“(병합한 단일안 마련 관련)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상황,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 것이다”

- 민주당 관계자 언론 인터뷰 -

(5) 문재인 정부의, 다음 번 붉은 깃발 리스트는?

- (청와대는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 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8월 13일자 한국경제신문
은 청와대 20대 규제혁파 리스트를 선정했고, 이 중에는 △내국인 카지노 설립 허용 △산
악 케이블카 허용 △수도권 규제 완화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제한 폐지 △온라인 게
임 현금 이용한도 폐지 △옥외광고 규제 완화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고 기사화 함.

2. 규제란,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에 대해

- 어떤 규제를 강화하고, 어떤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 -

(1) 규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네이버 사전)

-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

(최병선, 『정부규제론 : 규제와 규제순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1992.)

- “규제 즉, ‘규칙과 제도’는 사회와 시장을 운영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의 하나 일뿐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그 자체가 ‘악’이나 ‘암’과 같은 나쁜 가치로 평가될 수는 없다. (중략) ‘규제의 합리적 조정이나 개선’이라는 과제는 모든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이지 어느 시대에 정치적 브랜드(‘전봇대’, ‘손톱 밑 가시’ 등)를 붙여 규제폐지 자체가 정치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남근 변호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2015.01.10)

(2) 어떤 규제를 강화하고, 어떤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공정거래 등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 대기업 독과점 보장, 실효성 없는 규제, 특정집단의 특권 보장, 부패와 책임회피로 악용될 규제는 해체하고 완화해야

※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대표적 피해 사례

- 1999년 카드사용 한도 규제 폐지 : 2002년 신용카드 대란
- 2006년 저축은행의 제로베이스 규제완화 : 2011년 저축은행 사태
- 2006년 사행성 게임의 규제 완화 :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 2007년 타워크레인 안전 검사 규제완화 : 빈번한 붕괴 사고
- 2013년 15년 이상 아파트 리모델링 시 수직 증축 허용
- 2014년 불산 가스 등 화학물질 사고 책임기업 처벌 규정 완화
- 2014년 지하철 내구연한 규정 삭제. 1인 승무(2003년)
- 2014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상 인원 규제 완화 :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 기업 독과점과 특정 집단 특권을 위한 규제

- ‘밍밍한 맥주’로 대표되는 진입장벽을 높여 대기업의 독과점을 보장하는 규제
- 청소년 게임 섯다운제와 같이 실효성 없는 규제
- 각종 마피아 등 특수 이익집단의 특권을 보장해주는 규제
- 부패와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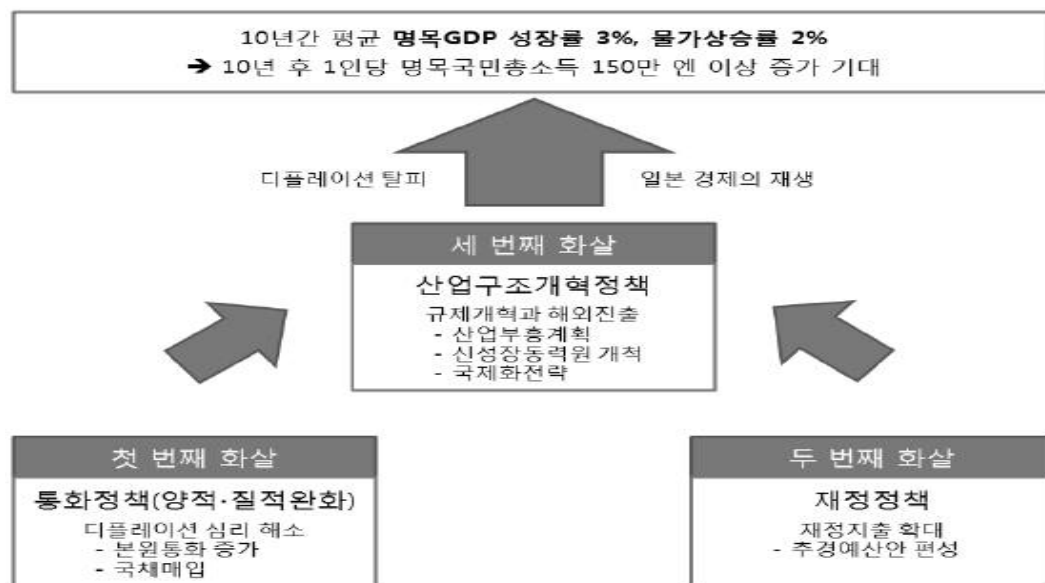
3. 정부의 규제혁신 5법의 뿌리는?

- 아베노믹스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

○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은 박근혜정부가 입법 추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프리존법의 뿌리인 일본 아베노믹스의 「국가전략특구법」,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모태로 하고 있음.

(1) 일본 아베노믹스의 3가지 화살

○ 일본의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내각은 디플레이션, 엔고, 저성장 탈출을 위해 2013년 초 3개의 화살에 기초한 아베노믹스를 채택



자료: 임준환황인창이해은,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보험연구원 CEO Report, 2014.10

- 첫 번째 화살은 대담한 양적 완화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두 번째 화살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 세 번째 화살은 규제 개혁과 대외 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구조개혁정책’임

(2) 일본의 규제개혁 3종 세트

○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은 전국단위의 ‘통상적 규제개혁’, ‘지역단위 규제개혁’과 ‘기업단위 규제개혁’의 3가지로 구분됨

① 전국적 규제 완화 : 통상적 규제개혁(의료/농업/노동) -->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개혁

② 지역별 규제 완화 : 국가전략특구법 -->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③ 기업별 규제 완화 : 산업경쟁력 강화법 -->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규제프리존법, 규제 혁신 5법

- 전국단위의 ‘통상적 규제개혁’은 의료, 농업, 고용·노동의 3개 분야를 중점분야로 선정.

- ‘지역단위 규제개혁’은 2013년 제정한 「국가전략특구법」과 추후 개정안에 근거하여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제안을 받아 규제개혁 패키지를 준비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선정. 특정지역에 필요한 규제개혁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다음 전국으로 확대. 규제개혁 내용은 「국가전략특구법」에 특례조치사항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반영하고, 추가로 특구를 지정하여 규제개혁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국가전략특구법」을 개정하는 방식

- ‘기업단위 규제개혁’은 2013년 제정한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근거하여 규제 대상 여부를 신속히 확인(‘그레이존 해소’)해주고,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이 가능하게 하거나,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이 규제에 대한 특례(‘기업실증특례’)를 요구해오면 안전성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도 확보하여 기업이 스스로 신기술의 안전성을 입증한다는 전제 하에 정부가 심사하여 허용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프레임워크

	통상적 규제개혁	국가전략특구	기업실증특례·그레이존해소 제도
대상 범주	전국	특정 지역	특정 기업
추진 현황	- 규제개혁회의(총리 직속 심의 자문기구) 설치('13년 1월) - 규제개혁 핫라인 설치: 내각부('13년 3월) - 규제개혁실사계획 각의결정('13년 6월)	- 「국가전략특구법」('13년 12월 제정)에 근거 - '14년 3월 1차로 6곳 선정 - '15년 3월 2차로 3곳 추가	- 「산업경쟁력강화법」('13년 12월 제정)에 근거 - '15년 4월 말 현재, 기업실증 특례제도 7건 승인, 그레이존 해소 제도 25건 조회 결과 통지
특징	- 의료, 농업, 고용·노동 3 분야를 중점 추진 -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대하나 이해상반 문제 등으로 시행 속도가 느림.	- 특정 지역에 필요한 규제개혁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다음, 전국으로 확대 - 정부가 규제개혁 패키지를 준비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선정한다는 점에서 'Top-down' 방식	- 법률개정이 아닌 시행령·시행규칙에 특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추진 - 기업의 신사업·신기술 도입을 정부가 적극 지원

자료: 김규판, 「아베노믹스의 국가전략특구 추진 현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5.5.28.

(3)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법안

○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끈 최경환 부총리(2014.7. 취임)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벤치마킹하여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환율에 적극 개입하는 한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음 법안들의 입법화를 추진하였음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은 과잉공급 분야 기업들이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세법의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로서 2016.8.13.년부터 3년간 한시적 시행 (2015.7.9. 이현재 대표발의, 2016.2.4. 수정가결)

- 동법의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의 '사업재편 지원제도'와 유사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가 서비스산업의 규제·지원 관련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며,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2012.7.20. 정부발의, 임기만료 폐기), (2016.2.18. 김용익 대표발의, 임기만료 폐기), (2016.5.30. 이명수 대표발의, 국회 계류중)
 - 정부의 서비스산업 지원정책은 아베노믹스의 ‘통상적 규제개혁’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동법에 따른 정부의 서비스시장에 대한 개입 확대는 대기업의 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시켜 영세업자들을 퇴출시키고 현 의료공급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농어업,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서비스업으로 규정해 특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가능성이 높음. 특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③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과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심의 사항(④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사항)에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기본계획과 심의를 담당하는 것이 핵심적 문제임.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특별법)은 시도별로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현행 법령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2016.3.24. 강석훈 대표발의, 임기만료 폐기), (2016.5.30. 이학재 대표발의, 국회 계류중)
 - 규제프리존법은 <시도별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특례>를 통해 지역별로 생태환경 부담금을 감면시켜 난개발을 유도하고, 의료법인에게 부대사업을 허용해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열고,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풀어 골목상권의 침해는 물론, 무분별한 모텔·호텔 증축, 개인정보인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 법안임.
 - 특히 규제프리존법은 <신기술기반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출시 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어도 기술 검증과 시장 반응의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기간·규모를 한정하여 시범사업을 허용함으로써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법안임.

II. 규제혁신 5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을 이유로 규제 완화법 추진

○ 지난해 7월 발표한 문재인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4가지 축으로 구성됨

-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에 대해 분배 객체에서 성장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소득 증대 노력을 강화하여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은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사회안전망 확충, 인적자본 투자 확대 등임
- ‘일자리중심 경제’는 성장 과실이 가계로 전달되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여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복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은 고용친화적 시스템 구축, 노동 시장 제도·관행 개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임
- ‘공정 경제’는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사회보상체계를 혁신하여 경제주체 간 합리적 보상체계를 정립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은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임
- ‘혁신 성장’은 경쟁제한적인 제도혁신, 혁신 중기 육성 등으로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하여 3%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은 중소기업 성장동력화, 4차 산업 혁명 대응, 대외개방 전략적 해외진출 등임

-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네거티브 규제원칙 마련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자 함

***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탄력적용)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하도록 하는 것,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

- 지난해 9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심의·확정하였는데, 규제혁신 5개 법안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우선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신산업·신기술의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품·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함
- 최근 고용지표와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제사정 개선이 늦어지자 문재인정부의 성장전략의 무게중심이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이동하였고,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혁신 5개 법안의 입법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정부 여당의 규제혁신 5개 법안

- (행정규제기본) 신산업·신기술 분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특례 부여방향 및 규제정비 의무를 신설 (국무조정실, 정무위, ‘18.3.6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행정규제기본법」)
- (핀테크 분야) 혁신금융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금융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토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금융위원회, 정무위, ‘18.3.6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이하 「금융혁신지원법」)
- (ICT융합 분야)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으로 ICT융합 신기술·신서비스의 실증 테스트가 가능토록 실증목적 규제특례 제도 도입(과기정통부, 과방위, ‘18.3.7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융합법」)
-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을 통해 융복합 신산업 실증규제 특례제도 도입(산업부, 산자위, ‘18.3.6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융합촉진법」)
- (지역형 규제샌드박스) 지역특구(혁신특구) 내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 지원 가능토록 지역특구법 개정(중기부, 산자위, ‘18.3.15 김경수의원 대표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성장을 위한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명칭 변경)」(이하 「지역특구법」)

2. 규제혁신 5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가. 주요 내용

-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특례’의 도입을 위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 규정을 신설하여 신기술 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네거티브규제방식, 사후규제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신기술 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또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
- 「행정규제기본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만들 때 ‘규제로 인해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
-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은 누구든지 신기술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융합법」은 ‘기술 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은 ‘신기술이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
- 현행 「정보통신융합법」의 제3조 제7항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조항을 삭제

※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기본원칙) ① ~ ⑥ (생 략) ⑦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u> <u><신 설></u>	제3조(기본원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삭 제> 제3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u>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u>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 「지역특구법」은 지역혁신성장특구(혁신특구)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 ‘지역혁신성장특구’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에 대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 ‘지역혁신성장사업’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제안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금융혁신지원법」: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기하고 있지 않음

나. 평 가

- 현행 「정보통신융합법」의 제3조(기본원칙) 제7항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으로 대체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을 위한 ‘사전 규제 원칙’을 폐기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임.
- 결과적으로 신기술·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선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

2) 개인정보 보호

가. 주요 내용

-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은 ‘임시허가’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동 조치에 대하여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적정성 여부를 검증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
- 「금융혁신지원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

※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u><신 설></u>	제3조의3(개인정보의 보호)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u>임시허가</u>나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u>실증을 위한 규제특례</u>를 받은 자가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u>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u>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2에도 불구하고 <u>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검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정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개인정보의 보호, 비밀유지,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개인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따른 처벌 등 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나. 평 가

○ 비록 ‘임시허가’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한정되나, 특례조항에 의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핵심 규제들이 무력화됨. 즉 개인정보보호법 15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는 모두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규제혁신법이 통과된다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가명정보’ 등은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및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등이 제한 없이 가능해 짐.

○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비식별화 기술이 정보통신 기술이 보다 발달한 미래에는 이미 공개된 혹은 앞으로 공개될 데이터와 결합하여 재식별화가 가능해질 수 있음. 특히 가명정보는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

3) 규제의 신속 확인

가. 주요 내용

○ 종전의 신규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규정을 ‘규제의 신속 확인’으로 수정함.

- 종전의 신규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규정은 신규 기술·서비스를 개발한 자가 법령상의 각종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을 받지 못하거나 허가 등의 필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신속처리’를 신청함으로써 ‘임시허가’를 활용하거나 규제 개혁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게 했었음.
- ‘규제의 신속 확인’은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주무장관(혁신특구는 시도지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면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주무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주무장관(혁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시도지사)은 허가 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이를 통해 관련 사업자가 ‘임시허가’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나. 평 가

○ 신규 기술서비스와 관련하여 ‘허가 등의 필요여부’를 정부가 신속히 확인해주는 규제의 신속확인 은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는 필요함. 그러나 종전의 신규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를 ‘규제의 신속 확인’으로 대체한 이유가 ‘기준·규격·요건이 근거 법령에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법령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아 허가 등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용이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은 문제임.

4) 임시허가

가. 주요 내용

-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의 ‘임시허가’는 허가 등의 근거법령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되는 조건 하에 주무장관(혁신특구는 시도지사 경우)에게 신청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검토(30일 이내)를 거쳐 주무장관이 허가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유효기간은 최대 4년(2+2년, 1회 연장)임
- 「금융혁신지원법」은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구분하지 않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혁신금융서비스’는 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분에서 다룸)

나. 평 가

- 근거 법령에 신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또는 허가 등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 법령 제·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법령의 미비를 보완할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하고 이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여 제도를 수정 보완하는 것은 필요함
- 다만, 신기술서비스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의 ‘맞지 아니한’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안전성 측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임시허가’ 관련 조문에 명기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임시허가’ 관련 조문에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지역 균형발전 저해 여부와 관련된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로 명기해야 함.
- 관계기관에게 주어지는 검토기간(30일)이 짧아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종전 1+1년(최대 2년)에서 2+2년(최대 4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법적 불비로 인한 ‘임시허가’를 장기화 하는 것으로 취지 상 맞지 않음.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혁신금융서비스

가. 주요 내용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 “관계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아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검토(30일 이내)를 거쳐 주무장관이 허가하는 것이며, 유효기간은 최대 4년(2+2년, 1회 연장)임
 - 규제특례 심의 시 고려사항에 국민의 안전·생명·건강·환경 및 지역균형발전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포함하며, 지정 시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다만 「정보통신융합법」은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 지정 가능”을, 「지역특구법」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기관장에게 통보”를 제한 사항으로 두고 있으나, 「행정규제기본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별도의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 않음.

○ 혁신금융서비스는 1. 금융관련법령에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러한 규정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금융관련법령상 ‘혁신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없는 경우로서, 특례를 인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 허가하며(제한 사유 규정), 유효기간은 최대 4년(2+2년, 1회 연장)임

-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시 고려사항은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의 충분성,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금융관련 법령의 목적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여부 등임

-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전에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시험운영 중이며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위험 고지 후 이용자에게 시험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나. 평 가

(1) 안전성 검증 문제

○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 검증된 경우이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는 반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안전성 측면 검증된 경우’를 허가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고, 심의 시 고려사항에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의 저해 여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관리 조항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의 저해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증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규제특례 심의 시 고려사항으로 하며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 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식임

- 특히 관계 법령에서 해당 신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안전성과 관련된 것일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큼.

○ 관계기관의 검토기간(30일 이내)이 짧아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현행 법령 위반을 장기간 허용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임

(2) 법체계 등 권한 침해 문제

○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관계 법령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산업의 발전속도를 관계 법령이 쫓아가지 못해 발생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에도 규제의 필요성이 존치하기 때문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업을 규제특례를 통해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행정 당국에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음. 이는 특히 국회가 입법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에 다름 아님.

- 또한 타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신청 내용 검토하여 30일 이내 문서로 회신)이 아닌 (신청을 받은)기관의 장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산업통상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에 대해 규제 특례 부여)은 행정기관 간에 권한 침해에 해당하고 소관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임.

<참고>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 영국의 경우 2015년 11월 핀테크 분야에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금융감독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금융상품을 규제의 제약 없이 일정 기간 동안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선정기준은 ① 기업의 사업범위(영국 금융감독원의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② 혁신요소, ③ 소비자 편익, ④ 지원 필요성, ⑤ 준비상태 등이고,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필요시 연장할 수 있음
- 영국의 규제샌드박스는 규제기관(금융감독원)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금융서비스시장법(FSMA)과 EU법에서 제한하는 사항은 샌드박스를 적용할 수 없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설명자료, 2017.12)

6) 손해배상책임

가. 주요 내용

-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법」에서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받는 자 또는 ‘혁신금융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는 경우 배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함

- 아울러 혁신금융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소규모 혁신금융사업자가 거래 위험의 감수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 이 경우 혁신금융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을 지도록 함

나. 평 가

-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사업자에게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과실 유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임시허가에 있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무과실책임주의’의 도입은 바람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된 손해는 배상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법령을 위반되는데다 사전에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허용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지양되어야 함.

7) 지역 지역혁신성장특구 규제특례

가. 주요 내용

- 종전의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상의 지역특화 발전특구(시장·군수·구청장 관할)에 대한 제안, 신청, 허가 사항과 지역특화특구에 대한 일반 규제특례는 큰 틀에서 유지를 하되, ‘지역혁신성장특구’에 관한 특례 사항을 대폭 삽입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으로 법안 명칭을 개칭함.
- 민간기업 등은 혁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음.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와 협의한 후 지역혁신성장특구(‘혁신특구’)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혁신특구로 지정할 수 있음.
- 혁신특구로 지정된 구역과 지역혁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 특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함.
- 혁신특구에 대한 일반적 규제 특례로는 ①「건축법」에 관한 특례, ②「전시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③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④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⑤재정지원, ⑥인·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⑦「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 ⑧「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⑨「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⑩「수도법」의 적용 특례, ⑪「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⑫「경관법」의 적용 특례, 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⑮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⑯「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 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⑱「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⑲초·중등교

육법」에 관한 특례, ⑳「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㉑「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㉒「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㉓「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㉔「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㉕「농지법」에 관한 특례, ㉖「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㉗「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㉘「약사법」에 관한 특례, ㉙「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㉚「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㉛「도로법」에 관한 특례, 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㉞「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㉟「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㊱「주세법」에 관한 특례, ㊲「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㊳「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㊴「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㊵「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㊶「특허법」에 관한 특례, ㊷「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㊸「건축법」에 관한 특례, ㊹「주택법」에 관한 특례, ㊺「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㊻「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㊼「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㊽「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㊾「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㊿「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㉑「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㉒「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는 ‘지역특구’에 대한 일반 규제특례를 준용해 적용함.

나. 평 가

- 지역혁신 성장특구를 통해 임시허가 특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혁신특구에 대한 일반적 규제 특례에 있어 농지보전부담금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수도법 및 하수도법 특례 적용 등 16개 특례 사항이 신설되었고, 35개 특례 사항이 기초단체 수준에서 광역시도로 확대 적용하는 길이 열림.
- 규제프리존법 상의 ‘기업실증 특례’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환경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과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행위 등 독소조항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음.

<참고>

문재인정부·여당의 규제혁신 5개 법안의 주요 내용(표)

구 분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지역특구 규제특례법로 변경)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법령위반 금지 원칙 삭제(대체)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 한 신규 기술서비스를 원칙 적으로 허용			
우선허용 사후규제	우선 허용 원칙 명시	①제한사항 한정적 열거 ②장래 신기술 포섭 ③필요시 출시 후 제한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용 합 기술서비스 활용해 사 업 가능	누구든지 신규 서비스 제품 활용해 사업 가능	누구든지 신기술 활용한 사 업 가능	X
	(사후규제) 제한 사유	X	기술서비스 활용하는 과정 에서 국민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해야 함	신규 서비스·제품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 생명·안전·환경 을 저해하는 경우 에는 이를 제한해야 함	신기술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 우 에는 이를 제한해야 함	X
개인정보 보호특례	요건	X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 거나 대체한 경우. 임시허가 와 실증규제 특례시 적용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 거나 대체한 경우. 임시허가와 실증규제 특례시 적용	X
	규제 특례	X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외 이 용·제공 제한,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특례 적용 위치정보보호및이용법(위치정 보의 수집 등의 금지, 개인위 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 공, 제한 등) 특례 적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법(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외 이 용·제공 제한,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특례 적용 위치정보보호및이용법(위치정 보의 수집 등의 금지, 개인위 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 공, 제한 등) 특례 적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법(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목적 외 이 용·제공 제한,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특례 적용 위치정보보호및이용법(위치정 보의 수집 등의 금지, 개인위 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 공, 제한 등) 특례 적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법(개인정보의 수집·이용	X

구 분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지역특구 규제특례법로 변경)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동의, 이용 제한, 제공 동의 등) 특례 적용 → 이용 및 제3자 제공 가능	동의, 이용 제한, 제공 동의 등) 특례 적용 → 이용 및 제3자 제공 가능	동의, 이용 제한, 제공 동의 등) 특례 적용 → 이용 및 제3자 제공 가능	
임시허가	요건	×	기준 규격·요건이 근거 법령 에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u>안전성 측면 검증된 경우</u>	기준 규격·요건이 근거 법령 에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u>안전성 측면 검증된 경우</u>	기준 규격·요건이 근거 법령에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u>맞지 아니한 경우로서</u> <u>안전성 측면 검증된 경우</u>	임시허가 규제특례 구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요건 ①적용이 적합하지× ②적용 요건 등이 없음 ⇨ 인허가·등록·신고, 영업 행위 및 감독·검사 등 특례 적용 ■제한 사유 ①금융소비자 재산·개인정 보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예상되거나, ②금융질서 안정성 현저히 저해될 우려 ■고려사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금융소비자 보호 방 안의 충분성, 금융관련 법 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 할 우려 여부 등
	고려사항	×		국민 생명·건강·안전·환경·지 역균형발전저해 여부·개인정 보 안전 고려해 심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요건 및 특례	①기존 규제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맞지 않음 ②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규제적용 면제 or 완화	① 법령규정에 의해 허용되 지 않아 허가 등 신청하 는 것이 불가능 ②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 시험·검증 등을 위하여 규제 적용 전부or일부 ×	①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 나 제한된 구역·규모 안에 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②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③적용 요건이 없는 경우 ⇨ 시험·검증 등을 위하여 규제 적용 전부 or 일부 ×	①신청하는 것이 불가능 ②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③적용 요건이 없는 경우 ⇨ 시험·검증 등을 위하여 규 제 적용 전부 or 일부 ×	
	제한사유	×	<u>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 지정 가능</u>	×	<u>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기관장에게 통보</u>	
	심의 시 고려사항	국민 생명·건강·안전·환경· 지역균형발전저해 여부·개 인정보 안전 고려해 심의	국민 생명·건강·안전· 환경 · 지역균형발전저해 여부·개 인정보 안전 고려해 심의	국민 생명·건강·안전·환경·지 역균형발전저해 여부·개인정 보 안전 고려해 심의	국민 생명·건강·안전·환경·지역 균형발전저해 여부·개인정보 안전 고려해 심의	

[토 론 1]

김 남 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1. 규제프리존 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법률적 문제점

- 20-30개 규제 관련 법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음. 보건,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생명안전, 경제민주화, 교육균등 등 규제가 포함
- ‘기업실증특례’의 경우(법 제2조 4호, 제13조) 기업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실증한 경우 광범위한 규제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안정성에 대한 실증을 투자이익이 중요한 기업에 의존한다는 것은 큰 우려. 검토 기간이 30일 밖에 되지 않는 것도 문제임(법 제13조 제4항). 기업이 안전하다고 자체 증명한 자료를 제시하고 담당 기관장이 30일 내에 회신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 사실상 문제를 한 달 안에 찾아내지 못하면 허가되는 것임.
- 국민의 건강, 안전 등 중요한 문제를 사전예방이 아니라 사후처리 방식 위주의 대응방식.
-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규정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 규제완화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우려.”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 허용하는 것을 원칙”(법 제4조 제1항), “법령상의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 또는 **불합리**한 경우”(기업실증특례, 법 제2조 4호, 제13조 제1항)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에 의하여 규제완화의 범위가 정해질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불합리’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완화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우려
- 규제프리존 지정과 관련하여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기업의 투자이익과 규제의 공익적 목적을 비교교량하는 실질적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고 장관은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의 주체가 기재부 장관,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기재부 장관, 민간위원 귀촉권도 기재부 장관이 독점함. 기재부가 심의 및 지정을 모두 주도하도록 되어 있어, 비민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

- 규제프리존 지정권, 변경권, 지정해제권, 기업실증특례 결정권을 기재부 장관에게 부여. 기재부가 주도하는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에서 규제프리존 기본방향, 육성계획의 승인, 규제프리존의 지정, 기업실증특례의 부여 및 취소에 대한 심의 의결권한을 부여함. 사실상 기재부가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음. 이는 정부조직법상 행정 부처 1곳에 불과한 기재부에 다른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우월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문제임

-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규제프리존과 일본 국가전략특구의 비교 - 규제프리존 특별법,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를 발행하였으며(2016. 10. 31.) 여기서 줄속으로 추진된 규제프리존의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음. 여러가지 면에서 부실한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무리한 연계, 지역 나눠먹기식의 탁상행정, 중앙 주도의 성급하고 폐쇄적인 절차, 대기업 연계전략으로 지역 풀뿌리 기업 및 산업 육성의 어려움. 특구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 산업적 역차별 문제, 필요한 공적규제의 완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2. 규제혁신 5개 법안이란?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 정부는 지난해 9. 7.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심의 확정
- 신산업, 신기술의 경우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 제품,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기존규제에도 신사업 시도를 가능토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함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0901507644339> ([단독]규제프리존+지역특구=규제완화구역법 나온다..기재위 전담)

3. (행정규제기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332)

- 법안의 내용

(신설조문) 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

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
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로 인해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
하는 방식

2. 제품과 서비스의 인정 요건·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3.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
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4. 그 밖에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
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신설) 제19조의3(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의 적용 또는 존재 여
부에 대하여 국민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의 육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
다.

1. 기존 규제를 해당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에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안전·생명·건강·환경 및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여부

2. 해당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3.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 (평가)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 위반이 아닌가?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관계법률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이러한 내용(법을 바꾸기 전에 일부 완화,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 등에 부합하는가?

4. (ICT융합 분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348)

- (법안의 내용)

제2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임시허가”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1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조의3(개인정보의 보호)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나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받은 자가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기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 (평가)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데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 가능한가? 가명정보와 같은 것으로 꿈수 같다고 보는 의견
- 이러한 조치가 익명 조치인지 가명 조치인지 모호한데, 어느 정도의 조치인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중요. 지정 검증기관의 검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 검증기관이 해당 조치가 적정하다고 결정하면 해당 업체는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사실상 폐기처분 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데이터 결합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법제화로 연결될 위험이 있음.

5.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경수 대표발의, 의안번호 12489)

(주요 내용)

- 지역혁신성장특구. 시도지사가 민간 기업 등과 공동으로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함
-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를 설치함. 민간위원은 위원장(국무총리)이 선임
- 특구에 대해서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적용함

(법안의 내용)

제2조 16. “임시허가”란 지역혁신성장사업에 대한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17. “실증을 위한 특례”란 지역혁신성장사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등) ① 누구든지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지역혁신성장특구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

- 규제프리존과 유사한 법안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음.
- 규제프리존법에서 기재부에게 전권을 주는 것에 대하여 비판한 점을 반영하여, 중소기업벤처부를 소관 부서로 하고 관련 위원회(혁신특구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하였음
- 기업실증특례의 내용도 미세하게 달라짐. ‘불합리한 경우’는 삭제됨. 그러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라고 규정되어,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있음.

- 의료법상 특례조항이 있으나(43조 의료관련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는 현행법(지역특화발전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0조)의 내용과 동일하여 추가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지역혁신성장 특구 지정 신청을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법 제 73조) 기업에 의한 규제완화 민원을 법에 근거하여 처리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범위를 법에 제한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규제완화가 무분별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음.

6. (금융 분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등으로 핀테크 업체를 지원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존 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의 차별성이 인정된 금융업 또는 관련 서비스를 영위하는 상법상 회사에 대해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존 금융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지정 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영위하도록 함.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해당 서비스를 사실상 독점 운영함

(평가)

- 금융혁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현행 규제방식을 개선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출현을 유도하겠다고 하나, 현행 규제가 금융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부족

-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 적용을 통해 규제를 회피할 유인이 있음

- 개별 규제에 대한 특례 인정 또는 불인정을 금융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관점 및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에 기초한 금융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행정부의 재량권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우려

7. 산업융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 새로운 융합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융합 관련 기업들의 현장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기능을 확대하고 새로운 융합 서비스 또는 제품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등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예방 및 조정하기 위하여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함

(평가)

-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하는 내용 포함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 이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특례를 인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관련법령에 개인정보보호법도 포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할 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를 언급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를 위한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점에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음.

- 기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요청 할 수 있던 사항을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옴부즈만이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옴부즈만의 권한을 강화하였는데, 자칫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무분별하게 대변하는 민원창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토 론 2]

김 종 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1. 총 론

- 발제문의 문제인 정부 규제완화 내용에 대한 분석과 지적에 동의하고 이견이 없음.
- “문제인 정부가 표방하는 ‘혁신성장’의 기본적 방향¹⁾이 틀리지 않다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중 단기적 산업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시됨. 이는 소위 ‘규제완화’로 돌파하겠다는 문제인 정부의 해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될 것임.

2.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문제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등 관련)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임. 동법안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
- 동 법안이 말하는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 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임. (동 법안 제2조 제4호)
- 그런데 도대체 ‘혁신금융서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금융서비스’인가? 카카오뱅크, K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인데,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혁신금융서비스’인가? 법무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는데 모순 아닌가?

1) ‘혁신 성장’은 경쟁제한적인 제도혁신, 혁신 중기 육성 등으로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하여 3%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은 중소기업 성장동력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대외개방·전략적 해외진출 등 (발제문 中)

- ‘핀테크’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인데,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식이 인터넷전문은행인가? ‘○○페이’로 호칭되는 결제방식(삼성페이, 네이버페이)에서는 이미 산업자본이 진출해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가?
- 동 법안의 목적은 “우리나라도 금융분야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기존 금융회사에서 혁신과 경쟁이 촉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금융분야에서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이 은산분리완화인가?
- 현재까지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완화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를 반박할만한 정부의 논리도 없음.

3. 우선허용 / 사후규제방식의 위험성

- 정보통신융합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원격진료’임. (인체 내에 전자적 장치를 삽입하여 정보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도 포함될 수 있음)
- 발제문 내용과 같이 신기술 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선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
- 나아가 과연 ‘사후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이미 해당 산업에 상당한 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해당 산업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을 것임. 특히 외국(미국)자본이 결합되어 있다면 한미FTA나 각종 BIT에 근거한 ISDS의 문제가 발생함.

- “규제 때문에 신기술,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되지 않는다”기 보다는 “신기술과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되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개발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임.
- 신기술이나 혁신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스타트업이 어려운 이유는 사전적 규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전규제를 이유로 거부만 하는 일선 행정조직의 부족한 행정서비스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또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고, 대만의 사례²⁾와 같이 범정부차원에서 중

2)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의 역할, 이성호,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조사연구, 2005. 6. 10.

https://rd.kdb.co.kr/er/wcms.do?actionId=ADERERERWCE03&contentPage=/er/er/er/ERER27I00012_01RS.jsp

4. 대만

☐ 주요 특징

☐ 선별적 지원

- 개별기업의 경영개선 의욕, 잠재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지원

☐ 현장진단.지도

- 사전에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규모, 종류 등을 결정

☐ 지원기관간 협조

- 중소기업처를 중심으로 여러 지원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지원성과 보급

- 정부 발표나 간행물 등을 통해 성공사례 홍보

☐ 지원 및 지도서비스에의 용이한 접근

- 지도관련 비용은 대부분 정부가 부담

☐ 지원체제

- 전통적으로 대만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배양.강화를 위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둠

☐ 경제부 산하의 중소기업처, 공업국, 국제무역국(중소기업 보도체계)에 의해 지원

- 중소기업처 : 경영관리, 재무융통, 상호협작, 품질향상, 정보관리 지원

- 공업국 : 연구개발, 생산기술, 산업안전, 오염방지 지원

- 국제무역국 : 시장개발, 마케팅 지원

☐ 금융지원은 중소기업처에서 운용되는 재무융통지원체계 하에 추진

- 각종 금융기관을 통한 소요자금의 직접지원

-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한 소요자금의 간접지원

- 중소기업연합보도중심(中小企業聯合輔導中心, Small Business Integrated Assistance Center)에 의해 제공되는 각종 재무적 서비스 등. '72년 지방정부계 은행 및 합작금고의 공동출연으로 설립. 설립 초기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재무진단과 지도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었음. 이후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건전 회계제도 도입, 경영체질 강화 등으로 기능을 확대

☐ 벤처캐피탈

☐ 대만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캐피탈제도를 '83년에 도입

- 과학기술산업과 유희자금을 결합하여 중소기업을 발전.육성시키고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의 기능과 역할을 활용

- '83.11월「벤처캐피탈투자회사 육성 프로젝트」및「벤처캐피탈투자회사 관리규칙」등을 제정

- '94년「중소기업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관리법」에 근거하여 공적벤처캐피탈인 중소기업개발공사가 설립

☐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된 시기는 외국 벤처캐피탈회사와 결합하여 4개 벤처캐피탈회사가 설립된 '90년 이후부터임

- '98년말 현재 벤처캐피탈회사는 정부계 중소기업개발공사를 포함하여 117개

☐ 벤처캐피탈의 출자자 및 자금운용 현황

- 117개 벤처캐피탈의 주요 출자자는 국내 기업, 금융회사, 투자회사 및 정부계 은행 등 국내 민간기관이 75.9%를 차

소기업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임.

4. 지역특구법의 문제

- 김경수 의원안은 기존 지역특구법의 전면개정안인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시·군·구의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한편, 최근 기술혁신은 스마트·융합·사물인터넷(IoT) 등 넓은 영역에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가까운 일본은 자동주행, 드론 등의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최근에 국가전략특구를 대상으로 ‘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음.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

이에,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 사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 특히 국내 기업들이 49.4%로 가장 많은 출자를 하고 있는 것은 보험회사, 연기금의 비중이 큰 외국과는 전혀 다른 양상임

- 자금운용 현황

* .(1)자체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 (2)다른 벤처캐피탈회사의 운용펀드에위탁하는 방법 (3)일반적인 펀드운용회사에 위탁하는 방법 중에서 (3)의 비중이 78.6%에 해당 .

* ‘98년말 현재 117개 벤처캐피탈회사가 56개의 일반 펀드운용회사에게 운용을 위탁하고 있음

- 기존 지역특구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 김경수 의원안은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 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음.
- 그런데, 지역특구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2015년 5월까지 39회 개정되었고, 그 중 3회 개정에서는 규제특례를 확대하였으며, 지역특구법 제3장에서는 58개 법률, 129개의 규제특례가 열거되어 있음.³⁾ 이미 충분히 규제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김경수 의원안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유연성이 부족한 예가 무엇인지,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허용되지 않은 예가 무엇인지 제시되어야 함.
- 지역발전위원회 2015년 최종보고서 부록 1 <지역특구별 규제특례 활용 목록>을 보면, 현재 어떤 지역특구가 지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관광레포츠, 교육, 향토자원유통임.

<표 5> 특구 유형별 지정 현황 (단위 : 개)

계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향토자원유통
166 (100.0%)	40 (24.1%)	25 (15.1%)	17 (10.2%)	3 (1.8%)	81 (48.8%)

※ 2014년 상반기까지는 향토자원진흥과 유통물류 두 유형이 별도로 운영되었으나, 두 유형의 지역특구에 차별성이 적어 2014년 하반기부터는 유형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음

- 일례로, 고성군은 ‘조선해양산업특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6년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조선업 몰락으로 인해 조선산업특구지정으로 땅값만 오르고 자연환경만 훼손되었음.⁴⁾
- 드론산업,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의 첨단산업을 위해 지역특구가 활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

3) 지역특구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지역발전위원회, 2015년 최종보고서 30쪽

4) 경남 고성 '조선산업특구'...땅값만 올려놓고 잡초 무성, 연합뉴스, 2016. 7. 8.

임.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가 첨단산업과 관련된 특구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는 돈과 인력이 없어서이지, 규제가 있어서가 아님. 또한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첨단산업을 추진할 자본이 지역으로 이동하지도 않을 것임.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비행이 가능한 지역이 필요하다면 이를 조성하면 그만이고, 현행 제도로써도 가능할 것임.

- 그러나 지역의 균형발전전략 및 정책은 필요함. 이에 대한 정의당의 해법은 무엇인지 준비될 필요가 있음.

5. 결 어

- 비록 ‘규제완화’ 프레임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산업정책이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경제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생기업이 대기업의 횡포에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임. 공정경제의 시스템과 엄정한 법집행이 담보된다면 규제의 유무나 규제의 강도에 따라 신규투자나 기술혁신이 좌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나아가 기술혁신과 지역발전은 산업정책, 교육정책, 인구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어려운 문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제질서에서 국가의 성장동력이나 경쟁력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
- 4차산업혁명이란 표제 아래 IT산업이 과도하게 부각된 나머지 제조업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것으로 보임.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제조업 분야에서 어떠한 기술혁신

을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정부의 의지는 잘 보이지 않고 있음.

- 강고한 하도급구조의 해체와 부품업체의 기술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고,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함. 이와 관련한 대안적 정책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토 론 3]

방 효 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17년 7월 발표)

- 4가지 핵심 축 :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 혁신성장 - 제도혁신, 혁신 중기 육성 등으로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
- 중소기업 성장 동력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대외개방·전략적 해외 진출
-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네거티브 규제 원칙 마련 등 규제를 대폭 완화시도
- (행정규제기본법) 신산업·신기술 분야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 특례 부여 방향 및 규제 정비 의무를 신설 (국무조정실, 정무위, '18.3.6 민병두 의원 대표 발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혁신지원법) 혁신금융서비스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금융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토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금융위원회, 정무위, '18.3.6 민병두 의원 대표 발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 (정보통신융합법)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으로 ICT융합 신기술·신서비스의 실증 테스트가 가능토록 실증목적 규제 특례 제도 도입(과기정통부, 과방위, '18.3.7 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융합촉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을 통해 융복합 신산업 실증규제 특례제도 도입(산업부, 산자위, '18.3.6 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구법) 지역특구(혁신특구) 내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 지원 가능토록 지역특구법 개정(중기부, 산자위, '18.3.15 김경수 의원 대표 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명칭 변경)」

□ 경실련의 기본 입장

- 불합리한 규제 개선 원칙적으로 찬성
- 시대 변화에 따라 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춘 관계 법령 정비의 시급성 인정
- 해당 분야의 입법 활동에 대한 적극 노력 및 보완책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함
 - 관련 산업에 대한 국회의 입법 활동이 우선되어야 함.(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
 - 예컨대, 정부 발의나 청원 입법을 통해 일정 조건 또는 기간이 지나면 긴급 또는 자동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
- 규제 특례를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
 -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임
-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에는 구체적인 업종이나 분야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
 - 생명·안전·환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가능하다는 무조건적 방식의 입법은 매우 곤란
- 기존 법률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모호한 규제인 경우 임시허가 등은 조건부 가능
-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 사항임

□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 문제

■ 문제점

- 법률에 없거나 모호한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우선 허용하는 것은 찬성
 - 그러나 기존 산업 또는 서비스와의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분야를 ‘산업융합’이라는 표현으로 가리고 표현함
 - 예를 들고 있는 카풀서비스 및 심야버스 공유서비스 등은 기존사업자 등과 업역 갈등이나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어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든다고 함
- 1) 공유경제 서비스와 관련한 산업 융합 기술 및 서비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항이며, 사회적 갈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음
- 2) 산업융합 촉진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논의되고, 정리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입법이 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 3) 이를 다른 형태로 바꾸어 입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으며, 국회의 고유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임

➡ 의견

- 생명·안전·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요소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등은 제외
- 개인정보, 의료기기, 원격진료, 유전자, GMO 농산물, 은산분리 등
- 오히려 필요한 분야나 산업 기술, 서비스를 적시하여 입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임

□ 개인정보 보호 문제

■ 문제점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조치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함.

→ 1) 정보 주체의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데이터 결합까지 허용 - ‘가명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 가능한 정보가 절대 아니다.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특정 개인이 식별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함.

2) 데이터 결합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이미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통신, 금융, 보건의료 영역의 재벌 대기업이 될 것임.

3) 해당 조치 : 익명? 가명?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달라짐.

4)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를 별도로 언급하여 실제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피하는 꼼수를 부림.

➡ 의견

- 개인정보 보호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개인정보감독체계 정비 시급 : 현재 (행안부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산, 인사의 독립성과 집행 권한이 없음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도 개인정보 감독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지 못함
- 독립된 중앙행정기구로 개편되어야 함 -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일원화

□ 기타 : 입법 청원 제도 개선

■ 문제점

- 이미 국회 입법 청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지난 4년 동안 200여건 발의
- 현재 활성화된 입법 청원만 가능
- 국회가 기존 발의 법안을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입법 청원 제도 유명무실해짐.

➡ 의견

- 온라인 입법 청원 접수
-
- 일정 조건 충족 시 자동 심사권 부여. 예) 20만건 이상, 국무회의 긴급 요청시 등

메 모

메 모
